유관기관소식

중기청 「제1회 중소·벤쳐 창업박람회」개최 5월 25일~5월 27일 중소기업전시장

중소기업청은 중소·벤쳐창업기업의 판로확대와 투자유치를 통해 창업성공으로 연결시키고 창업붐 조성을 통한 실업해소를 위해 개최되는 제 1회 중소·벤쳐창업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2001. 2. 26~3. 31간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모집했다.

- 기 간 : 2001. 5. 25(금)~5. 27(일)
- 장 소 : 중소기업전시장(여의도)
- 주 최 : 중소기업청
- 주 관 :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, 한국창업보육센터협회, 한국벤쳐개피탈협회, 다산벤쳐(주)
- 주요행사내용 : 우수제품전시(300여개사), 투자마트(기업투자설명 18개사, 강연회)
- 참가신청대상기업 :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, 대학교수·연구원창업기업, 대학생 창업기업

이번 박람회의 특징은 ①21세기 디지털 경제의 성장 동력인 지식·정보·기술중심의 IT, BT, NT, ET 등 신산업분야의 벤쳐창업을 촉진하고, ②그동안 정부가 창업인프라 확충차원에서 기술의 원천인 대학·연구소를 중심으로 육성해 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, 대학교수·연구원 창업기업, 대학생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써 ③가시적인 행사성과 거양을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이 행사를 주관토록 하고 있다.

※ 문의 : 창업지원과 담당자 042-481-4409

중기청, 「제조물책임제(PL)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계획」

1. 추진배경

제조물책임법 시행(2002. 7. 1)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배상책임이 확대·강화

- 손해배상책임요건이 고의 또는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 전환되어 관련기업에 대한 피해배상청구가 대폭 증가 예상

※ PL : Product Liability(제조물책임)

'95. 7. 1부터 제조물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시행전부터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실시

〈제조물책임제의 파급효과〉

긍정적인 영향	부정적인 영향
○제조물의 안전성 강화	○제조원가의 상승요인
○소비자의 권익보호 확대	○신제품 개발의 지연
○기업의 경쟁력 강화	○기업의 이미지 손상 및 부담증가

2. 제조물책임(PL)제도의 개요

제조물책임제도의 정의

-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·신체·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가 부담해야할 손해배상책임제도

※ 제조물 결함의 종류

- 제조상의 결함 :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발생한 결함
- 설계상의 결함 :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함
- 표시상의 결함 : 경고사항, 취급방법 등을 불합리하게 표시한 경우

3.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차이

구 분	민 법	제조물책임법
책임요건	- 제조업자의 고의·과실 (불법행위·보증책임)	- 제조물의 결함 (무과실·엄격책임)
입증범위 (소비자)	- 제조업자의 고의·과실 -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	- 제조물의 결함 여부 -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

4. 유사제도

리콜제도

- 소비자보호법('96. 4), 식품위생법('96. 12), 자동차관리법('92. 9), 대기환경보전법('91. 2) 전기용품안전관리법('00. 7)등에 근거하여 제조물의

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동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유통된 제품을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회수하여 수리·교환, 환불,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는 제도.

5. PL대책 지원 현황

중소기업 PL공제보험제도의 운영

- 수출기업의 PL부담경감 및 국내의 PL법 도입에 대비하여 중기청, 중기협중앙회, 삼성화재등이 공동으로 PL공제보험을 개발·운영
- '99. 8. 16부터 중앙회를 계약자로 하고 개별 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일괄계약에 의한 PL공제보험제도를 운영
- 삼성화재보험등 9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보다 20~30%저렴한 가격으로 중소기업의 PL공제보험을 인수

※ 2001. 2월말 현재 141건(약6억원)의 PL보험을 인수, 62건(8천만원)의 손해를 보상

PL대책의 실무교육 실시

- 한국표준협회, PL Korea, PL센터 등에서 PL관련 교육을 실시중이나 교육비부담(3일기준 50만원)으로 실적이 저조
-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금년하반기부터 교육과정 설치예정

  PL대책의 진단·지도 및 제품안전관련 규격인증 실시
- 중기청에서 CE, UL 등 외국유명규격획득지원을 실시(2001년 107억원)
- 중진공, 민간 컨설팅기관 등에서 PL 진단
- 지도 사업을 실시중이나 고가의 비용부담 (4~5천만원)으로 실적이 저조

6.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지원

PL대책의 추진확산을 위하여 우리청 정책자금을 우선지원

- 대상자금 : 구조개선자금, 경영안정자금(업력3년이상), 중소·벤처창업자금(업력3년미만),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
- 지원조건 : PL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산시설보완, 시험·검사설비 도입, 연구·개발, PL컨설팅 등을 추진시

* 융자금리,상환조건 등 기타 사항은 기존 지침을 적용

- 지원방법 : 자금지원 심사시 평가우대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우선지원 추진 (2001년 4월 부터)

7. PL 진단·지도 및 시험·검사지원

중기청의 기술지도사업과 연계하여 생산현장에서 필요한 신뢰성향상 기술지도를 실시(2001년부터 과제당 3백만원 한도지원)

- 지도기관: 전자부품연구원 등 3개기관
- 중진공의 지도지원사업에 PL진단·지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민간 컨설팅 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(2001년 4월부터)
- 1개월기준 컨설팅비 : 민간업체 45백만원 → 중진공 25백만원

제조물의 안전성 시험·검사지원

- 지방중소기업청 및 대전기술지원센터에서 시행중인 연구개발용 시험·검사 무료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 시험·검사에 대하여도 무료지원을 실시(2001년 4월부터)
- 지원분야 : 제품의 안전기준(규격) 적합성 시험, 제조물 결함 측정 등

〈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홈페이지(www.smba.go.kr)를 참고〉

규제개혁위, 개정안 의결

벤처기업 기준 2년마다 심사

앞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돼 조세 및 자금지원 혜택을 받더라고 2년마다 이뤄지는 심사에서 벤처기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다고 한다.

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.

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고 사후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확인이 취소돼 조세 및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.

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 요건중 최소 100분의 5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했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다르게 하도록 했다. 또 현재 78개 개인투자조합 가운데 12개가 투자액 5억원 미만의 영세조합으로 업무가 중단돼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중 출자액 총액을 1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, 조합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.